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8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제221748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3

I.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제221748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비용·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

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3. 검토의견

가.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디지털 공원</u> ”이란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u>제4장의2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u> <u>제25조의3(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2.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 콘텐츠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 운영 및 경관 연출의 기준·절차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현행	개정안
<신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제공 2. 공공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3.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4.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6(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디지털 공원”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공원 조성 및 운영, 디지털 공원의 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사업의 실시,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을 위한 민관 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현행법	개정안
법적 정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정의	◦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 신설
공원 기능	◦ 녹지 보전, 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 중심 ◦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 규정 미흡	◦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체험·교육·문화 기능 강화 ◦ 무장애 안내 및 접근성 지원 장비 설치 근거 마련
주요 시설	◦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시설 등	◦ AR·VR 콘텐츠, 미디어아트 시설, 디지털 도슨트 시스템 등 추가
이용 시간	◦ 야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	◦ 야간 개장 및 디지털 경관 연출 근거 명시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하면, 개정안은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 및 조성·운영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¹⁾에 조경, 휴양, 유희, 운동,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양시설 등의 공원시설에 더하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와 미디어아트²⁾ 및 프로젝션 매핑³⁾ 등을 연출하기 위한 디지털 시설 등을 추가하고,

이와 아울러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디지털 공원을 야간 운영하고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기능을 종전의 녹지 보전 및 시민의 건강·휴양 증진 중심에서 체험·교육·문화·관광 등으로 확대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하여 디지털 안내 기술 등을 활용한 무장애 이용 환경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공공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도를 증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첨단 ICT 기술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콘텐츠 및 편의 기능 등을 도시공원에 적극적·효과적으로 활용·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도시공원의 디지털 기능 강화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정적

2) 디지털미디어 및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구현 방식

3) 건물 외벽 및 사물 등 3차원 입체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생동감을 불어넣는 미디어아트 기술

유인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이 디지털 공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는 누가 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측면⁴⁾이 있고,

디지털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조성·운영 단계에서 ICT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중 디지털 공원과 디지털 공원이 아닌 도시공원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도시공원의 디지털 기능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 및 조성·운영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디지털 공원’ 및 ‘디지털 경관 사업’은 그 개념 및 실체가 정립되지 않은 용어로, 디지털 공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공원관리청⁵⁾의 적용 기준이

4)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디지털 공원”이란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부재함에 따라 제도적 수용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은 물리적·실체적 공간을 기반으로 공원 유형을 세분⁶⁾하고 시설 설치 기준 및 공원·녹지의 조성·관리를 정해놓은 규범으로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공원’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현재도 증강현실 및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도시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에 활용하고 있어 조문 신설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5)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법 제19조의2)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서울특별시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분류되는 바, ‘디지털’은 도시공원의 기능 또는 주제가 아닌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운영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 중복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조문별 검토

개정안의 입법화를 전제할 경우,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명칭(안 제2조제3호의2)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융합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명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디지털’은 물리적 실재가 없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바, “디지털 융합 공원” 등의 명칭을 통해 물리적 도시공원의 유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공원 체험을 향상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도시가 직면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등을 “스마트공원”으로 명명하는 추세가 있으며, 개정안의 “디지털 공원”은 일정 부분 “스마트공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안 제25조의3제1항)

안 제25조의3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19조⁷⁾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고, 제21조⁸⁾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도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를 현행법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디지털 공원의 시설(안 제25조의3제2항)

안 제25조의3제2항⁹⁾에서는 디지털 공원에 AR·VR을 활용한 체험 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9) 「개정안」

제25조의3(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②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2.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 콘텐츠

텐츠,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및 스마트 안내 시스템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시스템 등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고¹⁰⁾, 공원시설의 설치·변경은 공원조성계획의 일부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 여부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¹¹⁾,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5조의3제2항 각 호의 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디지털 공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안 제25조의6)

안 제25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 제39조¹²⁾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공원의 설치 또는 디지털 공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4조¹³⁾에서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고 보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공원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